<서 면 답 변 서>

○ 이도형 위원(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 제3호 2000. 11. 27)

<질 의 1>

○ 도내 지방2급 하천 체불용지 총 보상대상은 얼마이며 체불용지 발생원인과 증가사유,
○ 그리고 보상대상 토지와 민원발생 현황, 또한 보상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도내 지방2급 하천 체불용지 총 보상대상은 7,017필지에 379만 2,700평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예산은 약 6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체불용지 발생원인은 토지 저가보상을 이유로 한 보상금 미수령, 소송제기로 인한 소송계류 중, 소유권 및 지적공부 미정리,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체불용지가 발생되고 있으며
○ 또한 수십년전부터 지방하천공사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되어 사용되어 왔던 사유토지에 대하여 그 동안 시효취득이 인정되어 무상 또는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국유로 취득하여 왔으나
○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권원없는 점유는 이를 불인정함에 따라 보상요구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 금년도에 도 및 시·군에 보상요구된 민원은 총 272필지에 7만 7,800평으로써 이중 77필지에 1만 5,000평은 보상완료하였으며 금번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주신 30억에 대하여는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체불용지 보상은 하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예정지로 지정 또는 하천개수공사 등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규정이 없어
○ 도에서는 보상대상 토지에 대하여 도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보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 의 2>

○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 중 미완공된 여주 흥서교와 양주 부곡철교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에서는 2000년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 매주 1회이상 사업추진 사항을 현지 확인·점검한 결과 총 1,737건 중 1,735건을 완료하였으며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주 흥서교와 양주 부곡철교는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미완료되었으나 여주 흥서교는 본 교량을 완료하고 마무리 중에 있으므로 12월 중 완료 개통될 예정이며,

- 구조물 공사로 동절기 공사시행불가 및 하천내 시설물 설치로 여름철 호우기간 제외
- 양주 부곡철교는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촉구하였으나 철도사업의 전문성과 우회 가선로 설치 등으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질 의 3>

○ 금년에 배수펌프장 현황을 물으시면서 배수펌프장을 가동하지 않아 피해입은 해당 지역과 피해액을 얼마이며 미가동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내 배수펌프장은 총 88개소이며 금년에 배수펌프장을 가동하지 않아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지난 집중호우시 언론에 보도된 구리시 수택1동

배수펌프장과 광명시 광명배수펌프장의 가동 지연과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리시의 경우 “수택1동 수해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한 바 배수펌프장은 정상가동되었으며 침수원인 또한 집중호우시 우수배제능력을 초과하여 발생한 천재로 조사되었습니다.

- 수해합동조사반(시청 2, 시의회 2, 남양주경찰서 2, 시민단체 2, 주민대표 2)
- 배수펌프장의 펌프능력과 하수관 용량의 부족으로 발생

○ 광명배수펌프장은 시의회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유언비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배수펌프장 미가동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다만 지난해 연천지역의 집중호우로 백의배수펌프장의 발전기와 펌프의 배선불량으로 가동되지 않아 배수펌프장과 주택 21세대가 침수되었으나 보수완료하여 금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질 의 4>

○ 2001년 호우시 인명피해가 29명이나 되는데 어른과 아이가 각각 몇 명이며 보상기준과 보상이 완료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2001년 3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사망 23명, 실종 6명이며

○ 연령별로 20세이상이 20명, 20세이하 8명, 연령 미상 1명이며 보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계획지침(행정자치부)에 의거 사망·실종자에게 위로금이 지급되며,

○ 사망·실종자 29명 중 세대주(11명)에게는 각각 1,000만원 세대원(17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지급되며 신원미상 1명은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 사망·실종으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은 없으며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92(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위)

○ 임성균 위원(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 제3호 2000. 11. 27)

<질 의 1>

○ 용인, 광주, 김포 등 일부 시·군의 난개발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데

○ 그 동안 경기도에서 준농림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그 동안 난개발 방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난개발의 주요 원인은 공동주택 등 각종 개발행위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등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여 심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우리 도에서는 난개발을 해소하고자 난개발의 주된 원인인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주력한 결과

  ㅇ 부족한 학교용지 해소를 위하여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과 함께

  ㅇ 도로·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용도의 국토이용계획변경 취소 규모를 3만㎡에서 10만㎡로 상향 조정하고 대규모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건설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5건의 관련법령을 개정하였으며,

  ㅇ 공동주택 경관심의제 도입, SOC 건설비용 확보를 위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제정 등 조례제정 3건,

  ㅇ 공동주택 용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권한을 시장·군수 단독 결정에서 도지사 협의체제로 전환하는 등 규칙개정 2건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책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확립하고자 개발압력이 높은 시·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조기 수립 및 도시지역 확대 지정으로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틀 안에서만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도시기본계획 수립 : 김포, 화성, 광주, 양주

  · 도시계획 재정비 : 남양주, 용인, 이천, 김포, 광주(경안, 곤지암)

<질 의 2>

○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교부에 건의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앙의 진행상황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그 동안 우리 도에서 난개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 특히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기준이 없어 난개발에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웠으나 우리 도의 건의로

  ㅇ 공동주택사업 시행시 폭 15m이상 2개 노선의 진입도로 확보,

  ㅇ 사업부지의 10%이상은 녹지용지로 확보

  ㅇ 주거용지는 총 사업부지의 70%미만으로 구획토록 하는 등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여 2001. 1. 6 고시하였습니다.

○ 최근에 건의한 사항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의제되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 등 3건으로써 현재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건교부에서는 우리 도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개정하는 것보다는 모든 시·군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ㅇ 도시계획에 입각하여 보전할 지역은 철저히 보전하고

  ㅇ 개발이 가능한 지역도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사전에 충분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고 기반시설과 개발규모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현행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 도의 건의내용을 검토·반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질 의 3>

○ 지난 10여년간 추진하여 왔던 도시 저소득층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동안 교부세 등 중앙지원이 일부 시·군에만 한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 '99년부터 금년 10월말 현재 지구지정 현황 및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지역 노후·불량 주택 밀집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및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99년부터 2001년 10월말까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부천 송내 등 4개 지구이며,
○ 금년도 사업추진은 성남시 보통골지구 등 6개시 15개지구에 지방비 78억 7,800만원 및 국비 118억 1,800만원 등 196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추진계획에 의거 부천 오정지구 등 30개 지구에 국비 및 지방비 914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별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의 4>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이후로써 그 동안, 토지가격의 상승 등으로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소

요되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 우리 도내 97개 도시계획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은 도로·공원·녹지·광장 등 총 108.5㎢이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약 9조 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이상된 시설면적은 81.4㎢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사업비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 장기미집행 시설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년동안 6천9백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로·학교·공원시설 등 2.6㎢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를 통해 87개소에 65만 4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부나마 해소하였습니다.

○ 한편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년이상 집행하지 않고 3년내 사업시행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 일정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도시계획세 100%,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하는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용역을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용역결과에 따라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개발채권 발행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단기간내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지방재정 형편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00년 6월 27일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국고보조비율을 50%이하에서 50%이상으로 상향조정과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시 채권원금의 50%, 이자는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대한국토도시학회·KDI·지방행정연구원에 공동으로 용역을 의뢰하여 검토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부담과 지방재원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지난 11. 12 구성한 Task Force팀을 통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도시계획세, 개발부담금, 국고보조금, 도시개발채권 등 재원발굴에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도시개발 및 재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신규 결정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여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5>

○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시면서
○ 이에 대한 대책과 도 중심의 확실한 위험시설 개선방안과 12월 중 점검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다중이용시설은 사고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시설로써 우리 도에서는 월별·계절별 중점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우리 도가 중심으로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안전점검은 물론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 금년 12월 점검계획은 지난 11월 4일부터 24일까지 위락시설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도, 시·군, 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취합 조치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불안전 시설에 대하여는 추적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미이행 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 의 6>

○ 고밀도 아파트 건축시 소형주택 의무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재건축에 있어서는 실 수유자가 적정한 규모의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고, 소형주택의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에는 주택건설경기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정부에서는 최근 수도권지역에서 소형주택이 부족하여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서민층의 주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98년 1월 폐지된 소형의무비율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현행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 그 대상지역은 인구가 밀집되어 소형주택 공급확대 필요성이 높은 서울, 인천, 우리 도의 성남 등 14개시인 과밀억제권역으로써 사업규모는 300세대 이상으로 한정하고 의무비율은 20%로 하되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기존 평형까지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도입 방안의 시행으로 소형주택이 늘어나 서민층의 주거불안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만일 소형주택 확대공급으로 미분양 물량이 누적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한시적으로 의무비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향후 추이를 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 김경수 위원(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 제3호 2000. 11. 27)

<질 의 1>

○ 수해 침수주택의 대부분이 지하층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만성 수해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법에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 관리토록 하는 현행 규정이 있음에도 구역지정 실적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 주민을 설득, 지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시행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금년 7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침수주택은 총 15,839가구로써 이중 81%인 12,691가구가 지하층 주택에서 발생하여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에서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한 후 지하층 주택건축을 제한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 금년 8월 16일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관리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시장·군수들은 주민반발 등을 이유로 구역지정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 우리 도에서는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구역명칭을 주민거부감이 없는 주거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하고 일정한 구역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지정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국회 건교위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동 법령 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건교부와 협조를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 의 2>

○ 외국인의 토지취득 규제폐지후 무분별한 허용으로 최근 3년간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 우리나라의 토지가 외국자본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와 단기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일어났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택지소유상한제, 아파트분양가구제 등 물리적 투기억제의 수단으로 사용함으로서

○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해 왔으며 특히 IMF금융지원 이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외자유치 노력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의 토지취득 규제폐지는 필연의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규제폐지 이후 도내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2,791건에 13.73㎢로서 해외동포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신고(허가)된 토지가 2,201건 9㎢로 취득면적 대비 65.5%를 차지하고 있고

○ 외국법인이 공장용지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규로 취득한 토지가 471건 4.44㎢로 3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01. 9말 현재 보유면적 : 28,899천㎡(도내 전체면적의 0.28%)

- 국적별 : 미국 21,052, 유럽 3,698, 일본 1,520, 아시아 701, 기타 1,028
- 용도별 : 주택용 690, 상업용 2,872, 공장용 7,794, 기타 17,543

○ 이는 그간에 우리 도가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써 매우 바람직한 사안으로 현재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금년 9월말 현재 28.9㎢로서 도 총 면적의 0.28%에 불과하여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에 대해서는 취득동향을 주시하여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 확대와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세원의 탈루방지 및 부동산투기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3>

○ 새주소 부여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새주소 활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90여년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의 체계에서 도로방식에 의하여 부여된 새주소로의 적응은 단기간내에는 어렵고 안내지도 사용에 익숙치 않아 지도활용을 생활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봅니다.

○ 이와 관련 우리 도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지역부터 새주소를 생활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새주소 및 현행주소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내지도를 주민세대별로 보급하여 새주소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 사업추진 자치단체와 한국전력공사, 통신공사 등 각 유관기관에서부터 공문서 및 고지서에 현행 주소와 함께 새주소를 병기하여 우선 활용하도록 추진하여 도민들이 빠른시일내 새주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 전국적으로 새주소사업이 완료단계에 들고 새주소가 생활주소로 완전히 정착되면 행정자치부와 함께 관련법을 정비하는 등 모든 공부상의 주소를 점차적으로 새주소로 전환시켜 선진국과 같이 찾기 쉬운 주소체계로 정착시켜 도민의 불편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4>

○ 2001년에는 수해피해가 예년보다 적게 발생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평택지역의 실제피해보다 복구비가 28억 5,000만원으로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평택시 진위면 소재의 창갈배수로는 비법정 하천으로서 오산 등 상류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한 지형여건의 변화와 최근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집중호우시 발생하는 우수가 농경지내 미개수 배수로에 유입되어 배수로 제방유실 및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었음

o 2000. 8. 24 ~ 8. 26일 진위면 지역에 406㎜의 집중호우시 배수로 제방유실 등 980m 구간에 76,378천원의 재산피해 발생
⇒ 140,000천원을 투입 원상복구

o 2001. 7. 30~7. 31 진위면 지역의 177㎜ 강우시 동 배수로에 또 다른 피해 (8개소/55,384천원)가 발생

○ 배수로 단면부족으로 발생한 수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배수단면을 확장 정비하여 항구적인 수해예방사업을 추진함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개량복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질 의 5>

○ 1999~2000 2년 연속 도비를 지원하다가 2001년도에 도비지원을 해주지 않은 사업과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도비보조는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능력 등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제출한 후

○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이행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및 투자의 효율성, 도

재원, 시·군간 안배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도비를 지원하다 보니 연속적으로 도비를 지원하여 온 사업장이 지원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사전에 시·군과 협의하여 도비보조사업 계획수립시 우선순위를 보다 심층분석하여 요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문부촌 위원(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 제3호 2000. 11. 27)

<질 의 1>

○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대상 선정기준이 지난 9. 4. 해제조정안 발표로 주택 300호 이상에서 20호이상인 취락으로 완화되었는데

○ 그 동안 추진한 우선해제 현황과 경기도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의 개발제한구역은 1971.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1,291㎢가 지정되어 전국 개발제한구역의 1/4를 차지하고 약 30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구역내 주민들의 주거생활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하여 구역의 지정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20호이상인 집단취락과 구역의 경계선이 마을을 지나가는 관통취락에 대하여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선해제는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주민공람과 시·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는 관련 실·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건교부에 제출하고 건교부에서는 중앙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해제가 결정됩니다.

○ 그 동안 추진한 결과 오늘 현재 성남시 등 9개 시·군 22개 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안양, 고양, 화성 등 3개시 13개 마을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 당초기준에 의한 1단계 우선해제 추진도 내년 초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울러 금년 10월 1일부터 완화된 선정기준에 따라 20호이상인 중규모취락에(성남시 등 19개 시·군 559개 마을)대하여도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선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

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우선해제에서 제외되는 취락중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한 88개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질 의 2>

○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건설본부, 지역개발국(2청)의 명년도 예산요구 현황 및 그에 따른 예산배정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먼저 경기도 예산규모는 총 6조 2,985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조 6,994억원, 특별회계는 1조 5,991억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건설본부, 지역개발국(2청)의 명년도 예산요구 및 그에 따른 예산배정 현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 일반회계는 5,512억 4,9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4,697억 5,000만원(요구액의 85.2%)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의 10% 규모이며
- 특별회계는 3,367억 8,4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661억 6,400만원(요구액의 79%)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특별회계의 16.6% 규모입니다.
- 이에 따른 총규모는 8,880억 3,3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7,359억 1,400만원(요구액의 82.9%)이 배정되어 경기도 예산규모의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 예산배정액은 2002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회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질 의 3>

○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상습수해지역이 발생되어 하천개수공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에서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장, 군수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28개지구를 지정하여 5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6개지구는 금년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17개지구는 연차사업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앞으로도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의 4>

○ 단독주택 건립시 미관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면서

○ 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바와 같이 단독주택 단지에 담장 대신 수목 등을 설치할 때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데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다만 건축법에서는 담장에 대한 설치여부를 제어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인접 건축주간 합의문제, 방범문제 등으로 기존 주택단지에 도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 높이 2m이하의 담장은 임의 설치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담장설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위원님이 제안하여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신규로 건설되는 단독주택단지, 전원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권장,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기존 주택단지에 대하여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문부촌 위원(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 제3호 2000. 11. 27)

<질 의 1>

○ 조상땅 찾아주기 실적과 지적 전산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토지기록 전산화는 1983년부터 전산화를 추진 완료하여 '91년부터 전국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적도면 전산화는 2003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상땅 찾아주기는 이와 같이 전국 온라인이 연결된 토지기록을 이용하여 조상명의의 소유토지가 있으나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나 6.25전쟁으로 인해 토지위치(지번)를 몰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19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금년 10월말 현재 6,088명의 신청을 받아 1,221명에게 2,202만 3,000㎡를 찾아준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그간 도에서만 제공하던 조상땅찾아주기를 내년 2월부터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도민의 편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질 의 2>

○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고가도로, 지하차도만 만들지 말고 인간중심의 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 수원시내 교통난 완화를 위해 지지대고개에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법원 등 주요목적지를 순회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환승주차장 사업은 도심내의 차량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철역사나 주요 환승지

역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도심 교통체증과 시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 현재 우리 도의 환승주차장은 수원시 화서역 등 6개소에 980면의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안산시 반월역 등 6개소에 946면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지대고개와 같은 도심 진입지역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하고 주요 목적지를 경유하는 순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도심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다만 역주변에 설치되는 환승주차장은 역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셔틀버스 등 연계운행이 용이하나

○ 도심 진입지역에 설치되는 환승주차장은 도심내 목적지가 다양하여 시간 및 배차간격에 있어 순환 셔틀버스 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향후 건설될 예정인 환승주차장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이 우수한 곳을 선정하여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3>

○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중 경기도 지역의 해제현황과 군부대 등 시설이전 대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98년부터 불편사항을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국방부에 건의하고 각 지역 관할부대를 방문하여 보호구역해제 및 완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 이를 근거로 하여 11월 6일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우리 도의 해제 및 완화면적은 총 7개 시·군 25개 지역으로서

- 보호구역 해제가 1,164만평
- 협의업무 행정위탁이 38만평
- 고도제한 완화가 18만평으로 총 1,220만평이 해제 또는 완화되었으며 이는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군부대 등 시설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가 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 이전 검토시설은 광명의 육군 제7273부대를 비롯한 10개 시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다음달 끝나게 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의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법령의 개정 군시설 이전문제에 대하여 역점을 두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의 4>

○ 민자유치도로 학의동～고기리외 4개소가 어딘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지방도로의 시급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부족한 재원을 민간자본으로 유치코자 추진 중으로

○ 질의하신 학의동～고기리외 4개소는 우리 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와 건교부에서 추진 중인 평택～고색간, 김포시에서 추진 중인 고촌～월곶 등 4개 노선이며

○ 앞으로 도에서는 공개공모를 통해 민간자본 유치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